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임동원** · 문성훈***

〈요 약〉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범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 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상속세, 가업상속세제, 자본이득과세, 조세형평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001-00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fresh911@hanmail.net, 주저자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ooncta@hallym.ac.kr, 교신저자

I. 서 론

기업승계¹⁾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²⁾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는 ‘기업승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큰 이유(69.5%)로는 상속세 부담이라고 답했다. 실제로도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회사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현행 상속세 제 하에서는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상속세가 차지하는 내국세 비중(약 1%, 2017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상속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제한적이고 사후요건도 엄격해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2019년 6월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 → 7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소분류 → 중분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근로자수 120% → 100%)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발표하여³⁾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기업은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으며,⁴⁾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상속세 중 부분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또는 보완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승계 상속과세의 검토

- 1)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용되는 ‘가업승계’는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특정 집안의 사업승계 의미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기업을 포괄하는 ‘기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기업승계와 기업성과를 실증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세체계의 과도한 과세로 인하여 기업의 가업승계는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기업은 승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기업은 가업미승계기업에 비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주배당금 지급, 퇴직금의 중간 정산, 대손상각 및 충당금의 설정 등과 같은 조세부담 절감의 전략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현금이 외부유출 되었기 때문에 기업성과가 낮아지는 것이다(황우연, 2008).
-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2019.6.11.
- 4) 상속세부담에 따라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렵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다.

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과세제도 개편방향(자본이득과세제도)을 제언하고자 한다.⁵⁾

II. 현행 제도와 국제 비교

1. 상속세 및 기업상속공제 현황

가. 상속세 입법 취지와 과세대상의 변화

상속세 과세대상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합산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열거주의에서 제한적 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를 거쳐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에 이르기까지 과세대상을 넓게 포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차진아, 2013).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했고,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변칙증여에 의한 상속·증여세 회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되었고, 열거주의로는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서는 개별적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괄되도록 하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IMF 구제금융 이후 합병·분할 등에 의한 기업경영권의 변칙 증여 또는 상속이 문제되면서, 이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상속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면에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합병 등에 관한 증여의 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등에 유사한 경우도 과세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별 포괄주의도 열거된 거래 유형이 아닌 신종금융상품 내지 새로운 자본거래, 법인을 통한 증여 등 대처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들이 나타나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 증여의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독립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5) 기업상속공제 관련 선행연구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위주로 이뤄졌다. 최천규(2011)는 공동가업 상속, 손자녀 허용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이성봉(2012)은 기업규모 제한의 폐지와 일관된 정책의 유지를 주장했으며, 심충진(2013)은 독일의 신탁재산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현행 기업상속세제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자본이득과세라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도 증여로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완전포괄주의는 도입 당시부터 찬반론이 있었으며, 도입 후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나. 상속세 과세현황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⁶⁾로 과세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이후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최고세율 구간은 ‘30억 초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 ‘50억 초과’ 보다 낮아졌다. 최고세율은 45%에서 5% 상승한 50%를 적용하고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25.3%의 2배에 달하고,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회원국 총 36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63.8%),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개국(36.2%)인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⁷⁾이며 이 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0~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다. 2019년말 개정 전에는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10~30%까지 할증률을 차등적용했지만,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만 하고 있다.

〈표 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률

최대주주 등 지분율	2019년 개정 전		2020년~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20%	0%
50% 초과	30%	15%		

주 :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았음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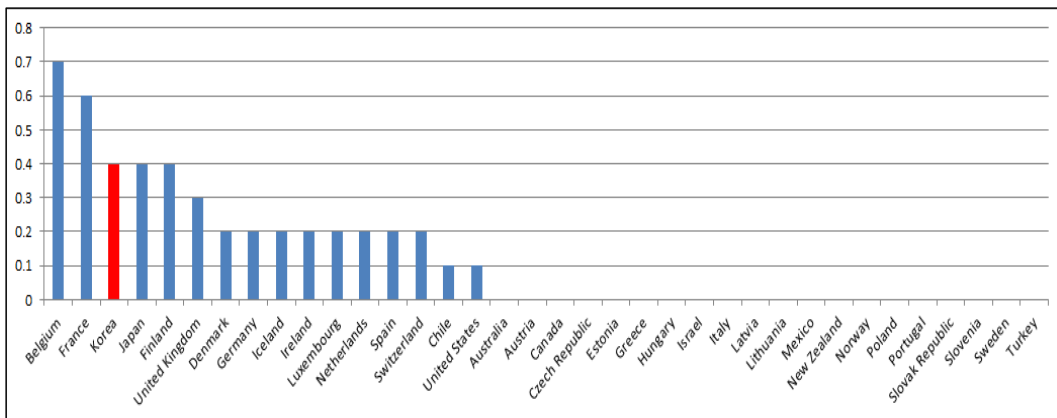
6) 우리나라 상속세율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7)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2017년 기준 상속세액은 2조 3,419억원이며, 전체 국세 265조 3,849억원 중 상속세는 0.8%,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는 6조 7,852억원으로 국세 중 2.6%를 차지한다.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4%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그림 1〉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2017년, %)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다. 기업상속공제 현황

1997년부터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까지는 기업상속공제금액이 최대 30억원에 불과하여 효과가 미흡하였다. 2014년부터는 피상속인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기업상속에 대해 피상속인의 기업영위기간별 200~500억원을 한도로 기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⁹⁾ 기업상속 이후 7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요건¹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상속공제금액의 70~100%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한다.¹¹⁾

- 8)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하여 지분율이 50%(상장기업의 경우 30%) 이상인 경우이다.
-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10) 1. 기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3.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받은 주식의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제외
 4. 고용평균의 100%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상속 후 7년 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 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표 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제도

	2008년	2009~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제대상	중소기업	(좌동)	• 중소기업 • 매출 1.5천억 원 이하 중견 기업	(좌동)	• 중소기업 • 매출 2천억 원 이하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 기업
공제율	20%	40%	(좌동)	70%	(좌동)	100%
공제 한도	30억원	60~100억원	(좌동)	100~300억원	(좌동)	200~500억원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서 정부는 일부 사후관리요건(7년으로 사후관리기간 축소, 중분류로 업종변경범위 확대,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 했지만, 적용대상과 사전요건의 변화가 없고 완화된 고용유지의무도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수 기준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구 분		현행 내용
요건	적용대상 ¹⁾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경영 •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기업 30%) 이상
	상속인	•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가업상속공제 금액		<공제금액> 100% <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 가업유지 :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내 변경허용)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 매년 80%+10년 평균고용 100%

주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 및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안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¹²⁾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되는 것이다.

〈그림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교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전체 양도차익(2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취득가액 100)	가업상속공제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양도차익(1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취득가액 100)	상속세 납부 (시가 200)	상속인 양도 (양도가액 300)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으로 인하여 2011~2017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76건, 공제금액 2,089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2,500건, 공제금액 284억유로(한화 약36.5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독일과 비교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의 차이가 100배 이상 나고 있다. 중소기업(Mittelstand)이 대다수를 차지하는¹³⁾ 독일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상속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 실현에 가업상속공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속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 또는 완화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독일의 제도에 비해 공제대상과 사

1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임(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율=가업상속공제액÷가업상속재산가액

13)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99.6%, 고용 58.5%, 매출 35.3%에 달한다(독일연방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bmwi.de/>).

전·사후요건 모두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특히 고용유지 요건의 기준이 근로자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전환되어야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역량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환경에 적합할 것이다.

〈표 4〉 기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 (백만원)	건 수	공제금액 (1,000유로)
2015년	67	170,593	24,006	56,780,667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평 균 (2011년~2017년)	76	208,949	12,513	28,409,179

자료 :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chaft- und Schenkungsteuer).

2. 주요국의 기업승계시 상속과세 제도

가. 상속세의 국제적 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¹⁴⁾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국은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OECD 절반 가량(17개국)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직계비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국가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4개국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¹⁵⁾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다. 즉 재산의 무상 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한해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시에 과세하고 있다.

14) 상속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William W. Beach. 2001).

15)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표 5〉 OECD의 상속세 과세 현황

구 분	국 가
상속세 부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칠레,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한국
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상속세 폐지 연도)	캐나다(1972), 호주(1979),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5), 멕시코(2005), 오스트리아(2008), 노르웨이(2014), 체코(2014),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미시행)

호주는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상속의 경우 사망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의 해당 자산 처분시 과세한다.¹⁶⁾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취득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유산세 과세방식, 높은 세율,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등으로 주요국의 상속세제에 비해 엄격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최고 60%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큰 경우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적용세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표 6〉 상속세제 국제비교

	한국	독일	일본	영국
과세방식	유산세	취득세	취득세	유산세
최고세율	50%	- 배우자, 직계존비속 : 30% - 형제자매 : 40% - 기타 : 50%	50%	40%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30억원	26백만유로 (약 335억원)	3억엔 (약 32억원)	325천파운드 (약 5억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0~20%	없음	없음	없음

나. 주요국 기업승계세제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가업상속공제율은 주요

16) 증여의 경우 증여를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시점에 과세한다.

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공제한도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율은 100%로 독일(85~100%), 일본(80%)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200~500억원으로 차등적용하지만, 일본은 금액적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계대상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 세제지원을 적용함에 따라 주식가액이 높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해외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까지도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간소화되어 있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기업규모별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7년)보다 짧다. 상속 후 최소 기업경영 기간은 프랑스 3년, 독일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도 프랑스 4년, 독일·일본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다. 고용유지요건도 우리나라는 7년 이상으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지만, 일본(5년), 독일(5~7년), 프랑스는 동 요건이 없다.

특히, 독일의 제도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12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하였고,¹⁷⁾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는 개정안을 2016년 11월 4일 채택했고, 개정 법령은 2016년 7월 1일자로 소급 시행했다. 가장 중요한 개정안은 대규모기업의 상속세 공제를 제한한 것이다. 2천 6백만 유로 이상의 자산 상속 시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필요

17)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BVerfG(Bundesverfassungsgericht), 2014.12.17., 1 bvl 21/12].

- (1)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a조 및 제13b조에 의거 승계 이전하는 기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공제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현행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지만, 입법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새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진다.
- (2) 기업 존속을 보장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기업들에게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조세감면을 위해서 적절한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가 세금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생산적인 재산에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표설정의 정당성에는 헌법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 (3) 상속세 공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제의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규모기업에까지 제공된다면, 기업재산에 대한 무상 취득 혜택 부여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의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정밀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제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이다.
- (4) 급여총액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종업원 20명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기업에게 급여총액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입법자가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기업(연방재정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내 90% 이상의 기업이 20명 미만의 피고용인이 있는 기업임)이 감세혜택을 받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제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¹⁸⁾ 세금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로 인해 기업의 존속 등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며, 대상 기업이 비사업용 자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¹⁹⁾

다른 요건은 개정 전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독일은 25%로 엄격하지 않다.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도 총급여 5년간 400% 또는 7년간 700%이고,²⁰⁾ 우리나라의 일자리수 7년 700%(중견기업 동일)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에서 엄격하지 않다.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동일하게 7년간 700%로 완화했지만, 총급여 요건이 아니라 근로자수 요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일본은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요건 이행 시 유예세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¹⁾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세유예한 후 일정 기간 고용과 경영의무 등을 이행하면 유예세액을 면제한다.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인이 대표자, 고용의 80% 이상, 지분 100% 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 목적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전액을 납세유예한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²²⁾ 한편, 일본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없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배주주²³⁾ 주식과 그 외 주식에 대해 평가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할 뿐이다.²⁴⁾ 2019년 4월부터는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유예 대상 주식 수의 상한을 없애고, 승계 후 5년간 80%라는 고용조건을 못 지키는 경우에도 계속 유예되도록 해서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18) 독일 상속 및 증여세법(ErbStG) §13a (1).

19) 상속인은 85% 공제와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 2천 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75만 유로당 1%씩 공제율이 감소하며,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공제가능한 자산규모는 9천만 유로(한화 약 1,167억 원)이다[ErbStG §13c (1)].

20) 85% 공제를 선택한 경우 5년간 400%이고, 100% 공제를 선택한 경우 7년간 700%이다.

21)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였다.

22)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내 경영승계수증자가 대표권을 상실하거나 특례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이 되면 증여세 유예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5년 이후 경영승계수증자가 특례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한 비율에 따라 증여세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3) 지배주주란 과세시기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동족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가 3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주주 및 그와 동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4)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유사상장회사 주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소액주주 주식은 배당금을 기초로 평가한다.

〈표 7〉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비교

구 분		독일	일본	프랑스
사전 요건	피상속인 요건	<기업규모 제한 X> • (85%공제) 비사업용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사업용자산 10% 이하 •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 비상장 중소기업,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50% 초과 보유	• 제조업(공업, 수공업), 상업, 농업, 자유업의 업종제한 있으며, 최소 2년간 지분 보유
	상속인 요건	×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내 대표 취임 •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
가업상속 공제금액		• 자산 2,600만유로 과시 75만유로당 1%p씩 공제를 감소, 최대공제가능 자산 9천만유로	•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 (2019.4월부터 공제상한 없음), 비상장주식의 80% 상당 상속세 유예	주식가치의 75%
사후관리		• ① 85% 공제요건-사업승계후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 유지(급여총액기준으로 5년간 400% 이상) • ② 100% 공제요건-사업승계후 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기준으로 7년간 700% 이상)	• 상속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받은 지분 유지 • 근로자 수의 80% 이상 5년간 유지(탄력 적용)	• 상속후 4년간 면세 적용받은 지분 유지 • 3년 이상 가업 운영, 매년 면세적용요건 입증 • 고용유지 요건 ×

III. 기업승계시 상속세제의 개편방향

1.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장벽의 제거 필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켜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이고,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고, 2018년 한해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

업(730개) 중 상속하지 않고 매각하여 현금으로 물려준다는 기업이 118개(16.2%)에 달한다. 기업 승계시 상속재산은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각, 물납²⁵⁾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²⁶⁾ 상속세 납부 때문에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확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조세 장벽으로 작용되며,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이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반영률이 부동산 등 기타자산에 비해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므로, 주식의 비중이 클 경우 실효세율은 60%에 근접하게 된다. 2017년 기준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42.8%)을 차지하며, 토지·건물 비중은 13.9%에 불과한 상황이다.²⁷⁾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일적인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과세근거가 취약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확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하지 않으며,²⁸⁾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확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승계 관련 상속과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²⁹⁾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서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했지만,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개편은 포함하지 않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고용유지의무 요건은 근로자수 기준이 아니라 신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기업경영에 저해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

25)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주식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물납이 가능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한도에서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고, 물납한 경우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다.

26)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시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9.5%)을 1순위로 꼽았다.

27) 2018 국세통계연보 참고.

28) 미국의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할증뿐만 아니라 할인평가도 가능하다. 일본은 거래를 통해 사후적으로 측정된 가치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한다.

29) 2011~2017년 가업상속공제 평균 이용건수는 76건, 건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27억원이다.

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도움되도록 기업이 유지·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유예하고 추후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서 조세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조세형평 측면에서 무상이전을 받는 상속인에 대한 과세공백도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시 한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면 조세장벽 제거와 조세형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의 단계적인 도입방안

가. 기업 상속세 제도의 단기적 보완방안

최근의 상속세 논쟁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기업 상속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지만 높은 상속세율과 낮은 가업상속공제액 등으로 여전히 세부담이 높다. 우선 현행 기업 상속세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 번째, 상속 전 기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유예 후 상속 시 정산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 상속 전 기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유예한 후 상속 시 상속세로 정산(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으로써 생전에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 전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승계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증여시점부터 상속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 만큼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므로 국가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확실적인 할증률 적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증권시장 시세가액이나 소액주주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즉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식을 평가할 경우에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에 근거하여 주식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미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대신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방안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자본재의 보유기간 중에 가치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통상이득(ordinary income)에 대한 상대 개념이다(최명근,

1998). 자본이득인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소득과세의 영역 밖에 방치되면 세수 관점에서 손실을 가져오고, 형평 관점에서 과세이연을 통해 유산을 축적한 가족과 세후소득으로 유산을 축적해 온 가족 간에 조세부담상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되어 무상이전시 자본이득과세가 필요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 주주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는 등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과세에서 누락되어 소득세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상속세가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을 하고 있고³⁰⁾ 자본이득과세를 실현할 만한 충분한 조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분야에 있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를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미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승계에 한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방법은 무상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무상이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실제 상속 또는 증여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방법, 무상이전 시점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규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안경봉·정희선, 2011).

첫 번째, ‘무상이전시 자본이득과세’는 상속과 증여의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취득시점으로부터 무상이전 시점 사이에 이전자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의 실현을 인식하고 그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³¹⁾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즉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이론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되어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자산 소유자의 무상이전 시점에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가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무상취득자의 해당 취득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방법이다. 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유예하고, 상속인이 양도(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30)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산취득세방식이 가미되어 소득세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로 인한 수증자의 재산 증가를 담세능력으로 포착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에 속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제는 소득세 같은 기본적인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김완석, 2007).

3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산에 대해 이미 소득세 등을 과세한 후에 축적자산에 대하여 무상이전될 때 다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폐지론자도 있다(Iris J. Lav, 2000).

때(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업의 원활한 승계 측면에서 상속시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없애주고, 추후 양도시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므로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 ‘신취득가액과세’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상속 또는 증여하기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다. 무상이전자의 무상이전시에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무상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무상취득자의 무상이전시의 시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자본이득의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과 같으나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³²⁾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면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 부동산 등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사업 관련 자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가업상속공제도 주식이나 사업관련 자산만 공제하고 있다.³³⁾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 제한을 없애고, 기업영위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20~30%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는다면 반대급부인 일자리 유지·창출을 해야 하며, 대기업의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적용은 일자리 창출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 수’ 유지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한 독일의 전체 근로자

32) 2017년 상속재산은 (토지)32.4%, (건물)27.4%, (금융자산)16.2%, (유가증권)13.9%, (기타)10.1%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승계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500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유가증권)42.8%, (기타)36.1%, (토지)12.2%, (금융자산)7.3%, (건물)1.7%이다.

33)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급여총액’ 유지 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저해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100% 유지 요건’을 ‘5년간 근로자 급여총액 500% 유지(대기업의 경우 5년간 550%) 요건’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만 고용창출의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 대상자산의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해야 한다. 장기간 처분하지 않는다면 과세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고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권장하는 측면이 중요할 수 있다.

〈표 8〉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구 분		현행 가업상속공제	자본이득과세 도입방안
요건	적용대상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기업규모 제한 ×>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 30%) 이상	<기업영위기간> • 5년 이상 경영 <지분율> • 특수관계인 포함 30% (상장 20%) 이상
	상속인	•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 2년내 대표자 취임
지원방법		<공제> 주식, 사업용자산 등 가액 100% <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등은 추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이연> • 상속시 주식, 사업용자산 비과세 • 대상자산 처분시 자본이득과세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 가업유지 :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내 변경허용)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 매년 80%+10년 평균고용 100%	<사후관리기간> 5년 • 기업유지 : 휴·폐업 금지 •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 총급여기준 매년 100% (대기업 110%)

IV. 결 론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서는 안될 것이다.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세 장벽은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돈이 아닌 미래가치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고,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³⁴⁾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상속세를 부과하는 입법목적은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라는 점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기회균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점을 들 수 있으나, 실제 상속세의 부과는 사망자수에 비하여 매우 낮아 입법목적의 효과는 미미하고 조세수입 대비 징세비용이 높아서 조세정책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김완석. 2007. “자산의 고가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논점”.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 106-107.
- 심충진. 201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승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 심충진 · 구자은. 2009. “중소기업 기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안경봉 · 정희선. 2006.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세법연구 06-05.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봉. 2012.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4호. 한국질서경제학회.
- 차진아. 2013.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41.
- 최명근. 1998. “부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과세와의 관계고찰”.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 78.
- 최천규. 2011. “현행 기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집. 조세연구포럼.
- 황우연. 2008.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과 기업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Iris J. Lav. 2000.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The Estate Tax. “Double Taxation and Carry-Over Basis” : 2.
- William W. Beach. 2001.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 : 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in Corporate Succession

Lim, Dong-Won* · Moon, Seong-hoon**

〈Abstract〉

Long-term companies are disappearing as business owners are considering giving up their succession and considering the sale because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Companies that are the roots and stems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not be reduced or dismantled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burden due to the legal formality of inheritan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question of taxation performance and its effects are being abolished, and the inheritance tax has been abolished and replaced by capital gain tax. It is becoming counter to international trend. Considering the impact of corporate succession on the continuity of the enterprise and further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nheritance tax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he revised tax law of 2019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by mitigating some after-care requirements,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troduction of Settlement taxation when inheriting and easing the valua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premium.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capital gain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remove the obstacles to corporate succession due to excessive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ax equity. The succession of the company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on corporate succession, and it will not be a problem in terms of tax equilibrium because the capital gains for both the deceased and the heirs are taxed when the assets are disposed. As a concrete measure,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is the subject of limited application, so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 should be applied to all companies, and the pre and post requirements must be greatly reduced.

〈Key words〉 Inheritance Tax,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Capital Gain Taxation, Tax Equity

* Research Fellow,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resh911@hanmail.net, First Author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oncta@hallym.ac.kr, Corresponding Author